

대구직할시달서구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 (안)

의안 번호	94-50
----------	-------

제출년월일 : 94. 12. .

제 출 자 : 대구직할시달서구청장

(기획감사실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이 1994. 12. 2.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대구직할시 달서구조례에 대하여 조례명칭 등을 변경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개정법률) 제2조제1항 및 제85조

3. 주요골자

- 현행 대구직할시 달서구 조례중 지방자치단체 및 장의 명칭과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 및 의장의 명칭 변경
 - 대구직할시 또는 직할시 → 대구광역시 또는 광역시
 - 대구직할시장 → 대구광역시장
 - 대구직할시 달서구 → 대구광역시 달서구
 - 대구직할시 달서구청장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 →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의장 →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4. 제정조례 (안) : 따로붙임

5. 근거법령발췌 : 따로붙임

대구직할시달서구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 (안)

현행 대구직할시 달서구 조례의 제명·본문(부칙제외)·〔별표〕 및〔별지서식〕중, 「대구직할시 또는 직할시」를 「대구광역시 또는 광역시」로 「대구직할시장」은 「대구광역시장」으로 「대구직할시 달서구」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로 「대구직할시 달서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로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회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회장」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구직할시 달서구」또는 「대구직할시 달서구청장」 및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 또는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회장」으로 표기하였거나 시행된 제문서 및 처분등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및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회장」이 한 것으로 본다.

근 거 법 령

지방자치법(개정법률)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별하여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2. 시와 군 및 구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및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고, 시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군은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안에 둔다.

제8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제2항, 제3조제2항·제3항, 제5조제2항, 제85조, 제101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 및 제160조제1항의 개정규정("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하는 개정부분에 한한다)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